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법제처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3. 7. 00. ~ 8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후단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4명(5급 2명, 6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”을 “4명(5급 2명, 6급 2명)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삭제한다.

별표 1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[별표 1]

<u>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6조제1항 관련)</u>	
(앞단 생략) ...	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5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 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 송통신사무관	4
(뒷단 생략) ...	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기획총괄과)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·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3조(기획총괄과) ①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4조(광역교통정책국) ① (생략) ② 광역교통정책국에 광역교통정책과·광역버스과 및 광역교통경제과를 두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 ③ ~ ⑤ (생략)	제4조(광역교통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5조(광역교통운영국) ① (생략) ② 광역교통운영국에 광역시설정책과·광역교통도로과 및 광역환승과를 두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 ③ ~ ⑤ (생략)	제5조(광역교통운영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<u>4명(5급 2명, 6</u>	제6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4명(5급 2명, 6</u>

<u>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</u> <u>제6조의2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</u>	<u>급 2명)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-----.</u> <u><삭 제></u>
---	---